

2026. 6.

미국 Cox v. Sony Music 기여침해 책임 관련 대법원 판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연구팀
홍지희 연구원

1. 사건의 개요

음악 저작권자인 소니뮤직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ISP)인 콕스 커뮤니케이션스(이하 ‘콕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¹⁾이다.

소니뮤직은 콕스가 자사 가입자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콕스에게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 및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니뮤직은 침해 추적 소프트웨어인 MarkMonitor를 활용하여 약 2년에 걸쳐 총 163,148건의 침해 통지를 콕스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소니뮤직은 콕스가 침해 행위를 반복하는 가입자에 대한 해지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콕스는 자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침해의 98%를 실제로 차단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소송의 경과를 보면, 1심 법원은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이에 콕스가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대위책임은 부인하였으나, 콕스가 가입자의 침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책임은 유지하였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25일 항소법원의 기여책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다룬 핵심 쟁점은 기여책임의 성립요건이었다. 대법원은 특히 ISP의 단순한 인지(mere knowledge)만으로 기여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 책임제한규정(safe harbor)과 관련한 주장도 함께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2. 쟁점별 상세 판단

1)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의 요건: 의도의 입증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기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서비스가 침해에 사용되도록 의도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도는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 첫째는 유도(Inducement)로서 특정 행위를 통해 침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경우이고,

1) Cox Communications,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et al. (사건번호 24-171)

둘째는 침해 특화 서비스(Tailored Service)로서 해당 서비스가 실질적이고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비침해적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콕스가 경고 발송, 일시 정지,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해 반복적인 침해를 억제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콕스가 제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음악 저작권 침해 외에도 다양한 합법적 용도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침해에 특화된 서비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서비스나 제품이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비침해적 용도를 가지는 이상, 일부 이용자가 이를 침해에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2) 단순 인지에 대한 판단

연방제4항소법원은, 콕스가 특정 가입자 회선이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도 해당 회선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계속 제공한 점에 주목하였다. 항소법원은 그러한 서비스 제공 행위가 단순한 방치를 넘어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의미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여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Sony 사건²⁾ 및 Grokster 사건³⁾ 등 선례를 근거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나 예견, 또는 방지조치의 미흡함만으로는 기여책임에 필요한 의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연방제4항소법원이 채택한 '침해 사용에 대한 인지와 계속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준이 기존 판례가 인정해 온 책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파기하였다.

3) DMCA 책임제한규정에 대한 판단

소니뮤직 측은, DMCA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간접 침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전제가 법률 체계 내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하였다. DMCA의 책임제한규정(safe harbor)은 책임을 새롭게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존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정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존재만을 근거로 기존 판례상 인정되지 않던 형태의 기여책임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DMCA 제512조 (I)항⁴⁾이 명문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제한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비침해 항변이나 그 밖의 항변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1984). Betamax VTR의 제조·판매가 저작권 기여침해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연방대법원은 해당 제품이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비침해적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그 제조·판매만으로 기여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P2P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배포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적극 유도한 경우, 그 이용자의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4) §512(I) (Other Defenses Not Affected): "The failure of a service provider's conduct to qualify for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ar adversely upon the consideration of a defense by the service provider that the service provider's conduct is not infringing under this title or any other defense."

3. 소수의견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콕스의 책임을 부정한 결론 자체에는 다수의견과 입장을 같이하였으나, 다수의견이 기여책임의 성립 범위를 사실상 침해유도와 침해 특화 서비스 제공의 두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접근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다수의견이 그 논거로 원용한 Sony 사건 및 Grokster 사건 역시 보통법상 방조책임(a common-law aiding-and-abetting theory)을 비롯한 다른 간접 침해 책임 이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간접 침해 책임의 유형을 두 가지로 고정하는 다수의견의 접근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만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콕스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특정 회선 또는 IP 주소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그쳤으며, 실제 침해자나 개별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나아가 그 침해를 성공시키려는 의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기여책임의 범리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면서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상 콕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참고자료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5pdf/24-171_bq7d.pdf